

마이더스 마이더스 KoreaStock중소형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DW369]

|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 | | |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식이 가격 하락위험에 노출되며, 비교지수의 변화를 일정수준 초과하도록 운용함에 따른 액티브ETF 투자위험 및 상관계수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이 요약정보는 마이더스 마이더스 KoreaStock중소형액티브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상장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와 1년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비교지수 대비 초과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지수의 성과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와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의 주식 운용역량을 바탕으로 한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혼합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비교지수: 코스피 중형주 지수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 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 | 투자신탁 | - | 0.620 | 0.010 | 1.570 | 0.687 | 70 | 144 | 222 | 389 |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2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 | | | | | |
|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 | | 2022/01/01~ 2022/12/31 | 2021/01/01~ 2022/12/31 | 2020/01/01~ 2022/12/31 | 2018/01/01~ 2022/12/31 | | | | |
| | 투자신탁(%) | 2022-08-16 | - | - | - | - | -24.8 | | | |
| | 비교지수(%) | 2022-08-16 | - | - | - | - | -29.18 | | | |
| 수익률 변동성(%) | 2022-08-16 | - | - | - | - | 19 | | | | |
| | (주1) 비교지수: 코스피 중형주 지수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 | | | | 운용경력 연수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규모 (억원)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 오화영 | 1985 | 책임 (차장) | 8개 | 3,009 | -29.54 | -16.64 | | | 9년 6개월 |
| 이천주 | 1971 | 부책임 (본부장) | 10개 | 1,347 | -1.62 | - | -24.20 | -12.68 | 20년 4개월 | |
| 문예지 | 1987 | 부책임 (과장) | 15개 | 3,020 | -21.56 | - | | | 4년 7개월 | |

| | | | | | | | | | |
|-------------|---|--|-------------|----|-----|--------|---|--|--------|
| | 김재현 | 1992 | 부책임 (사원) | 3개 | 224 | -21.95 | - | | 1년 7개월 |
| 투자자 유의사항 | <p>(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주요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 | 원본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비교지수(코스피 중형주 지수) 수익률과의 괴리 가능성 | 이 투자신탁은 특정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전략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투자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 및 소수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지수인 코스피 중형주 지수와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운용과정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 수에 따라 주식의 비중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시장 국면별로 코스피 중형주 지수와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주요투자위험 | 액티브 ETF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 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추적오차 및 상관 계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경우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 | | | | | | | |
|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 | | | | | | | |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기준가 | <table border="1"> <tr> <td>산정방법</td> <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 </tr> <tr> <td>공시장소</td> <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 </tr> </table>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 |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 |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 | | | | |
| 과세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과세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 <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 </tr> <tr> <td>수익자</td> <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 </tr> <tr> <td>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td> <td>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 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 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 | |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 | | | |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 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 | | | | | | | |
| 모집기간 | <table border="1"> <tr> <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 <td>모집·매출 총액</td> <td>10조 좌</td> </tr> </table>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 좌 | | | | | |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 좌 | | | | | | | |
| 효력발생일 | <table border="1"> <tr> <td>2024년 2월 7일</td> <td>존속 기간</td> <td>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 </tr> </table> | 2024년 2월 7일 | 존속 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 | | |
| 2024년 2월 7일 | 존속 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 | | |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8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 |
|---|--|